

추가약정서(판매기업용)

(발주서방식 미래채권담보대출용)

주식
회사 **하나은행** 앞

본인은 (주)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_____(이하 “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미래채권 담보대출」을 위한 _____년 ____월 ____일자 여신거래약정서(이하 “원 약정서”라 함. “원 약정서”와 추가약정서를 포괄하여 “대출약정”이라 한다)에 추가하여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하며, 은행의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이 적용됨을 승인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 ① “구매기업”이라 함은 협력기업으로부터 경상적인 상거래로 물품 등을 반복적인 거래형태를 가지고 발주서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기업으로 은행과 미래채권담보대출 협약서를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 ② “발주서”라 함은 물품 등의 품목, 수량, 납품기일, 금액 등을 전자적 방식 또는 기타 형식으로 작성한 구매기업 과 협력기업간의 물품공급 계약서, 물품구입주문서, 구매승인서 등을 말한다.
- ③ “채권확정”이라 함은 발주서에 의한 물품을 공급한 후, 구매기업이 협력기업의 물품등 공급에 대한 채권명세를 은행에 통보함으로써 매출채권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발주서전환방식 미래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채권확정(구매카드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승인자료 전송 포함)시 협력기업의 해당 발주서 관련 미래채권담보대출 잔액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구매카드 선입금 또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실행하여 미래채권담보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2조 (한도약정금액)

원 약정서상의 한도약정금액은 은행이 구매기업에 부여하는 총 한도에 따라 제한 될 수 있다.

제3조 (개별대출의 실행)

- ① “원 약정서”의 한도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개별대출금은,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은행에 인지도된 “발주서”상의 금액의 80%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② 채권확정이후의 개별대출금은 채권확정금액 이내에서 분할 신청이 가능하다.
- ③ 개별대출 신청은 발주일로부터 발주서상 만기일 전 영업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납품기한일로부터 구매기업의 매출채권확정 통지 전일까지는 대출 신청을 할 수 없다.



- ④ 개별대출 기간은 대출실행일로부터 발주서의 만기일까지로 자동 확정된다.
- ⑤ 은행 또는 인터넷 등 전산상의 사유로 대출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에 대출 신청하여야 한다.
- ⑥ 발주서전환방식 미래채권담보대출은 채권확정(구매카드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승인자료 전송 포함)시 협력기업의 발주서 관련 미래채권담보대출 잔액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구매카드 선입금 또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실행하여 미래채권담보대출을 상환한다.

제4조 (입금계좌 지정)

대출금 또는 상기 채권 만기시의 현금 입금계좌는 다음 계좌로 합니다.

예금주 : _____, 계좌번호 : _____

제5조 (개별 대출금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

- ① 원 약정서의 한도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내에서 실행하는 개별대출금의 상환기일은 구매기업이 채권확정 통보시 지정한 일자로 한다.
- ② 전항에 의한 개별대출금의 상환은 그 개별대출금에 대응하는 발주서의 매출채권 지급기일에 은행이 등 채권의 채무자인 구매기업으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아 충당한다.
- ③ 개별 대출금을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액 변제 받지 못한 경우(채권확정 금액이 “0”인 경우 포함) 그 나머지 대출금은 본인이 즉시 상환하기로 하며 건별대출 만기일까지는 연체적용을 유예키로 한다. 단,상환전까지 개별대출의 추가실행은 불가하다.
- ④ 발주서전환방식인 경우 본인 또는 구매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채권확정 후 구매카드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으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추후 미전환 사유를 해소한 후 전환처리 하여 개별대출금을 상환하고 매출채권 대금지급일까지 치유되지 않은 경우 대금지급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변제받은 대금으로 개별대출금을 상환하며 그 개별대출금의 만기일부터 회수일까지 원약정서에서 정하는 지연배상금률로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1. 구매카드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의 한도부족이나 미약정 또는 약정기일 경과
 2. 휴 · 폐업 또는 거래정지
 3.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 · 대위변제정보 · 대지급정보 · 부도정보 ·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 정보로 등록
 4. 기타 본인 및 구매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전환
- ⑤ 건별대출 만기일까지 상환되지 않은 개별대출금에 대해서는 원약정서에서 정하는 지연배상금률로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 (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출을 제한 할 수 있기로 합니다.

1. 본인이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 · 대위변제정보 · 대지급정보 · 부도정보 ·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 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때 또는 본건 대출과 관련하여 본인이 은행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본대출 이외 은행이 본인에게 제공한 타 여신이 연체된 경우
3. 전쟁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인 경우



4. 인터넷 등 장애나 은행 전산상의 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은행에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를 못하거나 은행이 대출을 할 수 없는 경우
5. 구매기업이 동 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은행에 대하여 지급을 연체한 경우
6. 구매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은행에 변제해야 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연체한 경우
7. 본인의 채권자가 구매기업에 매출채권을 대상으로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
8. 발주서의 취소 또는 변경 및 감액,반품,반대채권에 의한 상계 등으로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지급을 못 받게 된 경우
9. 발주서의 취소,변경 및 확정채권의 변경 등으로 건별 대출금이 당해 매출채권 금액 보다 클 경우

제7조 (매출채권창구매입수수료 및 지급방법)

- ① 매출채권창구매입수수료(이하 “매입수수료”라 한다) 라 함은 본인이 담보매출채권에 대한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은행”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은행”의 영업점 창구를 통한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대가로 본인이 “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 ② “매입수수료”는 대출 신청하는 담보매출채권 건수를 기준으로 하며, 징수시기는 개별대출금의 실행시이며 대출금에서 “매입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입금하기로 한다.
- ③ “매입수수료”금액은 원칙적으로 연 1회 “은행”과 “거래처”가 별도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1회 이상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기로 한다.
- ④ “매입수수료”를 조정하는 경우에 “은행”은 “은행”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변경기준일 1개월전에 변경내용을 게시하기로 한다.

제8조 (면책사항)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은행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9조 (대출약정의 종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출약정”에 따른 은행의 본인에 대한 대출의무는 면제되고, 본인의 은행에 대한 채무는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은행에 변제하기로 한다.

1. 은행이 거래처와 체결한 “미래채권담보대출 협약”이 종료된 경우
2. 거래처가 부도를 내거나 파산, 화의, 회사정리절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3. 구매기업이 은행에서 정한 미래채권담보대출 약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4. 본인 또는 구매기업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을 위한 발주서가 아닌 자금 용통을 목적으로 발주서를 발급한 경우
5. 구매기업에서 협력업체 추천 취소를 은행에 통보한 경우
6. 본인이 타행과 중복 약정을 체결 한 경우
7. 기타 대출약정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제10조 (본 추가약정의 효력)

본 추가약정, 원 약정,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본 추가약정이 가장 우선하고, 다음으로 원 약정,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순서로 한다.

년 월 일

채무자(본인)

주 소



연대보증인

주 소



연대보증인

주 소

